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체계

# 목차

1. 개요

2. 본문

2-1. 1.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란?

2-2. 2. 보고대상: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관련감염 중 비법정 감염사례

2-3. 3. 보고자: 환자, 보호자, 의료인, 의료기관 종사자, 의료기관의 장

# 1. 개요

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 사례를 인지한 사람 누구나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'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체계'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. 보고대상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관련감염 중 비법정 감염사례이며, 보고자는 환자, 보호자, 의료인, 의료기관 종사자, 의료기관의 장입니다.

# 2. 본문

## 2-1. 1.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란?

의료기관내 의료행위로 발생된 감염에 대해 인지한 누구나 질병관리청에 보고할 수 있으며, 집단사례(의심)일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

## 2-2. 2. 보고대상: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관련감염 중 비법정 감염사례

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란? 의료기관내 의료행위로 발생된 감염에 대해 인지한 누구나 질병관리청에 보고할 수 있으며, 집단사례(의심)일 경우 역학조사 실시   
보고대상: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관련감염 중 비법정 감염사례

## 2-3. 3. 보고자: 환자, 보호자, 의료인, 의료기관 종사자, 의료기관의 장

보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  
  
- 환자  
  
- 보호자  
  
- 의료인  
  
- 의료기관 종사자  
  
- 의료기관의 장